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



여 성 가 족 부

(학교밖청소년 지원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그동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시 가구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급자 확인조사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기 위해 방법 및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영 제8조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을 “확인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그 밖의 <u>관련 자료</u> 2. <u>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영 제8조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